

##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(안)

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항중 "각국장"을 "각실국장", "기획담당관"을 "기획관"으로 한다

제3조제3호 "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"을 "10억원이상

소요예산 사업의 투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"으로 하고, 동조 제4호 내지  
제6호,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, 동조 제14호중 "유통산업근대화"  
를 각각 "유통산업합리화"로하고, 동조 제20호 "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에  
관한사항"을 "지역에너지 중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"으로 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위원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1회 개최한다.  
다만,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3조 제12호 관련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